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67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39,020원, 지방교육세 225,3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가. 원고는 2016. 6. 29. [redacted]공사가 [redacted]시 [redacted]구 B 전 1,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실시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112,271,234원에 취득한 후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전제에서 취득세 3,368,130원, 농어촌특별세 224,540원, 지방교육세 224,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239,020원, 지방교육세 225,340원(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서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결정하여 취득세 등을 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라는 전제에서 동일한 과세물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과세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사후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세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지(임야)로 볼 수 없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

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151조 제1항 제1호,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152조 제1항, 제15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3호), 과세관청으로서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적용되어야 할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 등에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취득세 등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이를 두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거나 행정청이 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족세액 징수'가 중복과세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된 취득세 등에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써 취득세 등의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두고 중복과세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과세의 근거로 삼은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은 납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은 명문으로 부족세액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지방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고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구 지방세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피고가 취득세 등을 수납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부족세액에 관한 징수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호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입목(立木)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분명하다면 그 현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해당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 현황을 살펴 그 주된 현황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더라도 이를 농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오래 전부터 임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취득 당시에도 이미 넓은 면적에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취득 무렵 비로소 일부 면적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하였을 뿐이라면 그 임야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는 이유에서 임야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과세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기준시점 2015. 9. 1.)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임야(자연림)로 평가되었고(위 감정평가 당시 인접한 자연림이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어 그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다), 위 감정평가 당시 촬영된 3장의 사진(이 사건 토지 전경 사진, 이 사건 토지의 남서측에서 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측 및 동측을 각 촬영한 사진)에서도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경작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계에 설치된 가림막이 위 사진 촬영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해당 부분에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서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 8.경 이 사건 토지에서 실시한 현황조사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오른쪽 하단의 일부에 호박 등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다기보다는 임야의 형질은 그대로 둔 채 호박 등의 씨앗을 심었던 것에 불과하고, ② 그 규모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매우 작으며, ③ 그 식재가 이루어진 시점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호박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히 농작물이 식재된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현황은 주로 수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7조(신고·납부 등)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2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끝.